

##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대응” 현장 불시점검

- 5.11.(월)~5.15.(금) 제조업 끼임사고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의 초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정비중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력 대응’하라는 김영훈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진다.

\* <최근 사례> ▲(4.8.)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점검중 산업용 로봇에 끼임, ▲(4.9.) 폐기물업체에서 이물질 제거 중 압축기에 끼임, ▲(4.10.) 식품 업체에서 정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특히,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3시를 집중 점검 시간대로 정하고,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경각심 고취 및 점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우선 점검에 앞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하 지청장은 “끼임위험이 있는 기계에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고,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에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점검이 끼임사고 예방을 일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조대인 (033-769-0820)
		담당자	근로감독관	장래준 (033-769-0824)

안전한 제조업 현장을 만드는 필수 안전수칙!



**천원 차단** 해야  
**삼(生)니다!**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LOTO)



가동 중 안전장치  
해제 금지



회전부  
덮개 설치

# 첨부 2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

## 1 끼임 사고 예방

번호	점검 내용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1	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덮개, 울 등 설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2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벨트이동 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3	기계·기구 또는 설비 사용 중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4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5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5조)			

## 2 추락 사고 예방

번호	점검 내용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1	바닥면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2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3	추락방호장치가 곤란한 장소에서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갖춘 적절한 이동식 사다리를 안전수칙에 따라 적정히 사용하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항)			
4	작업발판, 안전난간이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 3 부딪힘·넘어짐 사고 예방

번호	점검 내용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1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2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3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통로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이 적절한가?(75럭스(lux) 이상)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4	통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다른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을 지정·배치하여 통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40조)			
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 4 화재·폭발·전기 사고 예방

번호	점검 내용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1	위험물을 작업장소 외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에 필요한 양만 비치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2	위험물 제조·취급 장소에 출입구 외 비상구를 설치하고, 비상구·비상통로 등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8조)			
3	인화성액체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방폭구조의 전기 기계·기구가 아닌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4	인화성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였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번호	점검 내용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5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인화성 물질을 미리 제거하고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6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7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			
8	적합한 소화설비를 비치·사용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9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원 접속부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조치가 적절한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10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적절히 하였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11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에서 정한 적절한 방식으로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였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			
12	위험물 저장설비 등에 제전장치 설치, 가습 및 제전복 착용 등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조치를 실시하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13	과거 사업장 내 화재발생 사례가 있는지			

## 5 질식사고 예방

번호	점검 내용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1	사업장 내 위험한 밀폐공간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였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2	질식 위험공간에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3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환기 및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4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 6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번호	점검 내용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1	설치된 국소배기장치가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포집·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어풍속을 유지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2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후 이상 유무(분진상태 등)를 점검하고 이상 시 청소·보수 등 조치를 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1조)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도 준수 필요			
3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해당 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5조)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도 준수 필요			
4	지급·비치된 보호구는 유해인자의 특성, 노출 수준등을 고려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제451조)			